

< 수시 공시 >

2016. 9.30.

자본시장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조항, 동법 시행령 제 223 조 제 4 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
규약 제 45 조 제 1 항 제 4 호에 의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
50 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, 대상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함.

1. 대상 집합투자기구

	집합투자기구
1	신영퇴직연금VIP밸류주식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2	신영퇴직연금VIP밸류채권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
2. 공시 사유 : 소규모 펀드 임의 해지 (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
원본액이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지함.)

3. 해지 일자 : 2016년 9월 30일

4.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, 한국금융투자협회
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
랍니다.